

## 김천의료원 초단시간 근로자(아르바이트) 모집 공고

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김천의료원에서는  
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### 1. 직종별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

#### 가. 직종별 모집인원

구 분	직종(직위)	모집 인원	세부 응시자격
초단시간 근로자 (아르바이트)	영상의학과 보조원 및 전화(예약)상담원	1명	[필수사항] ▪ 방사선사, 간호사 중 1개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
	진단검사의학과 보조원 및 전화(예약)상담원	1명	[필수사항] ▪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
담당업무	▪ (영상의학과1, 진단검사의학과1) 보조업무 전반		
근로조건	▪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(1주: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) ▪ 초단시간근로자 산재,고용(3개월이상고용시)보험 적용		
보 수	▪ 시급 1.8만원(이상) - “추후협의”		
비 고	▪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최대 1년 ▪ 추후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조정이 가능 ▪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		

#### 나.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및 김천의료원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 2. 모집방법

구 분	내 용	
채용방법	▪ 김천의료원 규정에 의한 채용	
공고방법	▪ 김천의료원 홈페이지	
접수방법	▪ 온라인 접수( <a href="https://gcmc.recruiter.co.kr/">https://gcmc.recruiter.co.kr/</a> )	
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입사지원서 1부</li> <li>▪ 자기소개서 1부</li> <li>▪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) 1부</li> <li>▪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 1부</li> <li>▪ 해당 면허(자격)증 사본(해당자) 1부</li> </ul>	비 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온라인 제출</li> <li>▪ 스캔본만 인정하며, 사진 촬영 등은 불인정</li> <li>▪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면접 합격자 발표문 참고</li> </ul>

## 3. 전형일정

구 분	일 정	합격자 발표
원서접수	2026.04.07.(화) ~ 2026.04.22.(수)	
서류전형	-	개별 통보
면접전형	개별 통보	김천의료원 홈페이지
최종합격자 발표	-	개별 통보

## 4. 전형기준

구 분	대 상	내 용
서류전형	채용전형 응시자	▪ 자격요건 적격 여부 판단
면접전형	서류전형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</li> <li>▪ 가산점 포함 면접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</li> <li>▪ 평균 점수 60점 미만, 1/2이상의 면접위원에게 60점 미만을 받는 경우 과락</li> </ul>

## 5. 기타사항

- 가. 전형별 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됨
- 나.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(공무원 기준)를 실시하여야 하며, 미검사 또는 이상자는 불합격 처리됨
- 다.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르거나 채용 과정 중 불공정 채용(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(가족채용제한) 포함)에 대한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,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함
- 라.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하며, 항시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
- 마.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10% 또는 5%, 의사상자 등은 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3%의 가산점이 있음
- 바.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
- 사. 예비합격자는 모집인원의 2배수로 하며,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후 퇴직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함
- 아.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(다만,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제출한 자료는 제외)
- 자.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
- 차. 이의 제기, 기타 사항은 인사팀(054-429-8172/8056)으로 문의 바람

2026년 4월 7일

**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**